

대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4다287059(본소), 2024다287066(반소) 판결 [부당이득금 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4. 11. 28 선고 2024다287059(본소), 2024다287066(반소)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9. 5 선고 2023나59337(본소), 2023나59344(반소) 판결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3. 6. 8 선고 2022가소20915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상고인A

피고(반소원고), 피상고인주식회사 B

판결 선고 2024. 11. 28.

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9. 5. 선고 2023나59337(본소), 2023나59344(반소)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박영재

대법관김상환

주심대법관오경미

대법관권영준